

『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
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로컬푸드 육성·지원계획 수립 추진(안 제4조~제5조)
- 로컬푸드 육성·지원 위원회 구성 운영(안 제6조~제16조)
- 로컬푸드 생산·가공 활성화(안 제17조~제18조)
-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치 운영(안 제19조~제20조)
- 구미 로컬푸드의 인증(안 제21조~제22조)
-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(안 제23조~제26조)
-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(안 제27조~제2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 및 회계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
 -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,
 - 올해 10대 농정 이슈로 선정된 “푸드플랜 활성화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생산 소비 측면의 다양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,

- 향후 로컬푸드 통합센터 및 직매장 운영에 있어서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농업의 특성과 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하여 로컬푸드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